

제429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2일(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1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6830)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570)
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1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1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2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2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2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2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2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3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3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4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4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4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
4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4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4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4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4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5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5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7)

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5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5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5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5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5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5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5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7)
6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4)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6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
6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6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상정된 안건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6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6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6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6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6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6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6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6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6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6
1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7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0)	7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0)	7

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7
1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7
1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7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7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7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7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7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7
2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7
2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7
2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7
2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7
2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7
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	7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	7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	7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7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7
3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7
3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7
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7
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7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7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8
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	8
39.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8
.....	8
40.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8
.....	8
4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8
.....	8
4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8
.....	8
4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8
.....	8
4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	8
.....	8
4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8
.....	8
4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8
.....	8
4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8
4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8
4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8
.....	8
5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8
.....	8
5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7)	8
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8
5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8
5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8
5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항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8
5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8
.....	8
5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8
.....	8
5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8
5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7)	8
6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774)	8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8
6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	8
6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8
6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9

(10시05분 개의)

○소위원장 김원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법률안 심의에 앞서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지 않은 시간 안에 많은 법안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 위주로 효율적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과 차관님도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 주시되 별 이견이 없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 위해 소속·직위·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3)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49)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5)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0)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7)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9)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0)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95)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9)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5)

1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76)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30)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0)
1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3)
1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0)
1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9)
1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2)
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4)
1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6)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19)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53)
2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3)
2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5)
24.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77)
25.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4)
26.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2)
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21)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49)
2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0)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3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3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3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3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3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2)
3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3)
4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4)
4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3)
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6)
4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6)
4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0)
4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6)
4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6)
4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48.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5)
4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5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8)
5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87)
52.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9)
5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7)
5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7)
5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5)
5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71)
5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9)
5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59.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7)
6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4)
6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25)
6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52)
6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43)

**6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4)
(10시06분)**

○**소위원장 김원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4항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6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8건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여야겠습니다만 지난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는 통과시키기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심사하기로 했던 3항과 4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심사자료 1권 9쪽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과 김원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지난번 9월 11일 소위 때 9쪽의 조합 등의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요청권의 규정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9월 11일 소위 때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의 신중 검토 입장에서 추후에 용역을 통해서 문구를 보완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 부분은 앞의 1번 꼭지의 단체적 계약에 관한 협의를 했을 경우에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등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단체적 계약 관련 협의 시에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과 단체행위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에 있는 꼭지와 함께 연계되는 내용으로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공정위와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허종식 위원** 중기부에서 공정위를 좀 더 설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기부나 우리들도 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공정위에서는 경성답합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거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걸어도 되니까 설득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협의요청권 김원이 의원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한번 의견을 내기로 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협의요청권 부여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의논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는 거였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 조항은 그래서 시간을 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협의안이 마련되면 그때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세희 의원안은 어떻게 신중검토가 일종의 반대 의견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좀 더 논의하자는 겁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아직까지는 경성담합에 대한 합법화에 대해서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공정위 측에서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그 문제도 같이 다시 둑어서 논의해야 될까요?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정동만 위원 공정위에 대한 중기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공정위에서는 경성담합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불평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단체적인 계약 체결에 대해 허용이 이루어진다면 부당공동행위 금지규정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동만 위원 담합을 허용한다는 것은 공정하고 또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다른 어떤 예외를 만드는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김원이 위원장님께서도 국감에서 그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한 102곳이 대기업에 납품하는데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좀 신중하게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만 현행 규정에서도 이게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조항, 단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이미 일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의 측면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 위원님, 이게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그냥 무조건적인 경성담합을 인정하는 게 아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정동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반적인 담합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상에서는 중소기업이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 주자 이런 측면이지 담합을 강화하자는 건 아니니까 이것은 통과시키고 중기부에서 공정위를 좀 더 설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다만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앞의 거랑 같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이 법안 때문에 의견이 들어왔더라고요. 대기업과의 관계를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소상공인의 하청업체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될 수 있다. 그래

서 이 내용을 좀 보완해서, 어쨌든 또 다른 시장우월적 지위가 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대기업으로 한하면 어떨까, 대기업과의 단체협상권. 그런 의견이 들어왔어요, 소상공인 업계에서. 저도 그렇게 보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오세희 위원님 의견 참고해 주시고요.

저도 하나 더 보태면 사실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의, 즉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대기업들의 담합행위를 막기 위한 거잖아요, 공정거래법의 취지 자체가. 그런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약자에 분류되는 중소기업들의 판로라든가 혹은 생산에 대한 최소한의 이윤보장 이런 것을 위한 조항인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좀 더 중소벤처부가 공정위원회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조금 더 묵혀서 다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실까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문위원님 계속 이어서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17페이지입니다.

이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내용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소재 파악 그리고 신청 안내와 통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제금 지급 대상자 연락 불가 사유가 전체 미청구 건수의 50.3%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공제금 미청구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에 휴대번호가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해야 한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저희가 흔히 알뜰폰업자라고 부르는 업체도 포함이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20쪽입니다.

계속해서 이종배 의원님 개정안 내용입니다. 공제사업 소멸시효 연장과 일시중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제금 지급 신청 안내와 통지 등을 하는 경우에 소멸시효를 일시중단할 수 있도

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멸시효로 인한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이 감소하게 되어서 공제금 지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 제121조의2제2항은 소멸시효에 대한 시효 중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 문 안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조항 사이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22쪽입니다.

계속해서 이종배 의원님 개정안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라고 하고 있고 또 안 부칙 2조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관련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 법 시행 당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공제금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연장된다는 내용의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에 대해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3조와 같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까지 소급해서 이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 그리고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시효제도의 취지 등과 함께 또 개정안의 입법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공제가입자 권리 보호 강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미 완성된 시효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및 시효제도 취지 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강승규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의견에 정부가 동의했지요?

○**이재관 위원** 그런데 정부는 위원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전문위원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 의견으로 해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소위원장 김원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구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까지 5년을 부여할지.

○**전문위원 성소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부칙 3조의 경우에는 보통 현법에서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부진정 소급효에 대해서는 협용하는 반면에 특단의 어떤 공익적인 필요가 있지 않으면 진정 소급효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서 부칙 3조를 이미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런 내용들과 함께 또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함께 고려해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니까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의견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건 그러니까 법률안을 제안한 의원님 뜻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박지혜 위원** 그런데 법률안 제안한 의원님이 부칙 3조가 문제라……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안을 줘 보세요. 아까 이재관 위원님 의견을 참조해 가지고 안을 한번 줘 보세요.

○**박지혜 위원** 3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 빼고 처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정부가 동의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3조를 뺀 것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칙 3조까지 포함한다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가 제3조에 대해서 법제처에 의견을 요청했는데 법제처도 위원님들이 정해 주시는 바에 따르면 되겠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의견이 없다 이 소리지요?

○**강승규 위원** 그러면 당초 원안대로……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의원 의견대로……

○**강승규 위원** 의원 발의한 대로 하면 되지요, 전문위원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위원장 김원이** 제 얘기가 그거예요. 정부 측이나 전문위원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그러면 발의한 의원님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게 옳은 것 아니냐라는 게 제안이었거든요.

○**강승규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김성원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래도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 안을 제안한 의원님 뜻을 반영해서 조문을 하시도록 하시지요.

○전문위원 성소미 예, 알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박상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요건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31페이지 참고자료의 표를 보시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조합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의 시도 또는 하나의 시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방조합의 경우에 법정 최소 발기인 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완화하고 도소매업은 현행 50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국조합입니다.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 전국조합은 법정 최소 발기인 수를 현행 50명에서 30명으로 완화하고 도소매업은 현행 7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업협동조합입니다. 시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의 발기인 수를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업종이 도소매인 경우에 현행 10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에서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합원 간의 이해충돌에도 조정을 통한 협력보다는 신규 조합을 설립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영세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지방조합, 전국조합, 도소매업종, 연합회의 최저 발기인 수 완화에는 동의드립니다. 다만 사업협동조합의 경우 31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기초지자체의 기반은 5개로 돼 있고 다만 광역권 또는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어느 정도 숫자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현행대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설립 요건이 너무 지나치게 낮아지면 조합이 영세화되고 또 전국협동조합과 기능 중복 문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완화에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진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세희 위원님이요.

○오세희 위원 이게 2010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발기인 수를 3명을 다시 한 건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오세희 위원 2010년에 법 개정이 돼서 발기인 수를 상향한 건데 사실은 광역인데 불구하고 50명이라는 말이지요. 거기서 5명을 한다는 것은 발기인 수가 또 5명…… 현재 오히려 상향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확대해서 활성화라는 완화의 취지가 있지만 영세하고 그 업종에서 또 쪼개 가지고 협동조합이 나오는데 협동조합이라는 게 5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하고. 그래서 이걸 완화할 필요가 있나, 2010년에 발기인 수를 상향한 건데 다시 내려갈 필요가…… 그러면 영세화되고 어차피 그 안에 있는 회원 수를 쪼개서 나오는 쪼개기가 되는 건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하고 비슷한데요, 두 분 다.

○강승규 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소위원장 김원이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차관님, 박상웅 의원이 이런 개정안을 낸 취지가 있을 텐데 조합원 발기인 수가 너무 많아서 조합이 뭔가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이 감소하는 추세고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지나치게 높은 발기인 수 부분이 지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체를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방조합, 전국조합, 도소매업종, 연합회에 대해서는 발기인 수 완화에 동의드리고 다만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만 현행 50개에서 5개로 낮추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안대로 협동조합의 발기인 수만 유지했을 때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 부분과는 어떻게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주로 지방조합이나 전국조합 분들이 지금도 제조 같은 경우에 30개,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50개에서 70개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로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사업협동조합은 저희가 판단할 때도 기초지자체는 이미 5개로 낮춰져 있기 때문에 광역권이나 여러 지역을 포괄하게 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를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5개로 바로 낮추는 건……

○강승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협동조합의 발기인 수를 50개로 유지했을 경우 기존 협동조합들의 기득권만 너무 주장하는 데 따른 폐해는 없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개정안 자체가 50개에서 5개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과도하다는 말씀……

○강승규 위원 50개는 적정한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지금 지방조합이나 전국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개를 30개로 낮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50개 부분에 대해서는 낮출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보면 전국조합은 현재 제조 50개, 도소매 70개를 제조 30개, 도소매

50개로 낮추는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 기준에 맞춰서 사업협동조합도 전국은 그 틀에 맞춰서 현행보다는 낮춰 조정하면 어떨까, 수정안을 내 봅니다. 그리고 광역은 따로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전국이 줄어드는 만큼 광역도 줄어들면 될 것 같고. 하나의 시군이 지금 5개니까 이것은 현행대로 가면 될 것 같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런 수정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강승규 위원** 저도 위원장 의견에 한번, 그러니까 이 법 낸 취지가 있을 것이고 현장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의견대로 50개에서 5개로 하는 것은 과하고 현장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50개라든가 30개 또 시군 5개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정진욱 위원** 사업조합 최저 발기인 수가 지금 전국·지방 조합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국·지방 조합 낮추면 사업조합도 일단 완화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준용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수정을 해 보지요. 그래서 지금 사업협동조합에 대해……

○**오세희 위원** 저는 광역이면 충남, 부산…… 예를 들어서 광역에 전라남도 50명이거든요. 50명의 사업조합 구성을 못 하는데 광역단체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세화를 하고 그다음에 많이 흩어져서, 지원이 많으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이게 지금도 굉장히 수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사실 조합 만드는 데 5명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이 많이 생기는 건데 저는 그걸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50명이면 절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20명 넣으면 광역을 대표하는 조합이다, 이것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굳이 이렇게 지금 급하게, 2010년에 상향을 한 법을 다시 또 낮춰야 되냐……

○**소위원장 김원이** 15년 됐으니까……

○**오세희 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게 많아요, 이 속에는. 광역을 대표하는데 어떻게 5명, 20명입니까? 적어도 진짜 100개는 모여야 되고 이런 건데 지금 이렇게 너무 난립이 된다는 거지요. 그냥 사방에 조합만 만들어 가지고 지원받고 다 조합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을 굳이 이렇게 낮추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추가 설명 좀 드릴 게 있어서……

○**소위원장 김원이** 예, 차관님 말씀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29페이지 제80조 보시면 ‘다만’ 이하에 준용규정이 있습

니다. 27조 제1항제1호 및 2호를 준용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지방조합하고 전국조합이 개정된다면 사업협동조합의 기준도 자동적으로 30, 50에서 20, 30, 50, 70에서 30, 50으로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변경을 안 하셔도 준용조항에 따라서 앞의 호를 개정하시면 개정이……

○정진욱 위원 그러니까 준용은 된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세희 위원님 말씀은 오세희 위원님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연합이라든가 현장의 현실을 잘 아시는 분이어서 조금 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너무 낮아짐으로 해서 생기는 난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하시는 문제의식은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합이 굉장히 영세화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사실은 유명무실한 조합들이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사업이라든가 또 활동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을 함께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사업협동조합도 5개로 주는 게 아니라 준용해서 주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하면 어떨까요?

○강승규 위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님 지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차관께서도 얘기했는데 이 법의 발의 취지 일 것이고 중소기업은 늘어나지만 협동조합이 줄어든다 그런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지금 오세희 위원님처럼 난립의 우려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 이런 부분의 상충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현장에 시급한 얘기인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저도 준용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업협동조합도 일정 정도, 5개는 아니더라도 그런 범위 내에서 문구 등을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는데요.

○소위원장 김원이 한번 수정안을 쥐 보시지요. 그 문구 조정안을 전문위원님이나 누가 쥐 보실래요? 지금 지방조합하고 전국조합하고 연합회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이미 합의가 됐어요. 지금 사업협동조합 이 조항만 수정한다로 해서 처리하면 되나요?

○전문위원 성소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세희 위원 이걸 더 고민을 해 보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이것을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겁니다. 29페이지 개정안 보면 개정안 '제80조(발기인)' 해서 '단서 삭제'라고 돼 있거든요. '다만'부터 밑줄 친 것이 삭제로 돼 있는데, 이것 삭제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성소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단서 삭제를 빼고 그 옆에 있는 80조 조항을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개정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오세희 위원님, 이 정도면 5개까지는 아니니까…… 오세희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으니까요. 부대의견으로 남겨 놓고 처리할까요?

○**오세희 위원** 저는 이것을 조금 실태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이게 지원이 따르거든요. 사실 지원이 굉장히 있는 거고……

○**강승규 위원** 지원이 많아요?

○**오세희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이걸, 지금도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게 높은 게 절대 아닙니다. 전라남도에 30명이면 되는 거예요. 도인데 이걸 가지고 또 낮춘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실태조사를 하고서 이걸 해 보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지금 중기부 입장에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이 판단이 나온 거지요?

○**오세희 위원** 이게 급한 건 아닌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일단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수는 증가하는데 협동조합은 줄고 있고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발기인 수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협동조합 수가 줄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협동조합은 제 개인적으로는 협동조합은……

○**강승규 위원** 오세희 위원님, 지금 해 보고, 어차피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또 부작용이 일어나면……

○**소위원장 김원이** 실제 협동조합 수가 줄고 있다잖아요.

○**오세희 위원** 협동조합 수나 소상공인들 다 줍니다. 그것을 인구도 소멸되고 사업도 그것 가지고 전부는 아닌데, 이게 진짜 줄 사람한테 줘야 된다. 지금도 소상공인들한테 진입벽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게 많은데 한 번 이렇게 되면 그걸 다시 조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굳이 이게 5명인데 단체, 조합이라는 게 이게 참……

○**정진욱 위원** 조금 더 논의하시지요. 이건 조금 더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럴까요? 그러면 계속 심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번에 3항, 4항 논의할 때 그때 같이 논의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면 오세희 위원님 걱정하시고 있는 현장 얘기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하면 현장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중기부에서는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발기인 수를 낮췄을 때 이러이러한 게 전망된다, 이렇게 좋아질 것 같다, 개선될 것 같다 이런 걸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법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차관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은데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에 오실 때는 준비하셔 가지고 ‘발기인을 이렇게 축소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설득력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것도 계속 심사하는 걸로 넘어가고요.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33쪽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입니다.

총조합원 중 중소기업자 외의 자 가입 비율을 규정한 시행령의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행령에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해당 조합의 총 조합원 수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은 조합 가입 그리고 법의 적용 대상 그리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조합원 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이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다음.

○**전문위원 성소미** 37쪽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협동조합의 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합 등의 임원이 사업 범위를 일탈하여 대부, 투기거래 목적으로 조합의 재산 처분 시 부과하는 벌금 한도를 현행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 원 이하 부과하도록 돼 있던 것을 징역 3년은 그대로 두고 벌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국회의 지침인 법률안 표준화 기준에서 징역 3년 이하에 상응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법정형을 3000만 원 이하로 하도록 입안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항 5항 7항 8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3항 4항 6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이상 2건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페이지 41쪽입니다.

김상훈 의원님과 이종배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내 주신 내용입니다.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명문장수기업 제외 업종인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만 유통·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하고 있는데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일반 유통 주점 등을 제외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이것 외에도 무도 유통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특정 업종의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진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해당 업종 영위기업들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련 법령에서도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동산·금융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2 제도는 2015년도 제도 도입 당시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제도 도입 당시의 입법 취지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산업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특정 업종 제한보다는 경제·사회적 기여 등 제도 취지에 맞게 평가하자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문안에 대해서는 김상훈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김상훈 의원님 안이 ‘일반 유통 주점업 등’ 해 가지고 나머지를 열거하는 것을 빼자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제가 의견 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업 또 금융업 같은 것, 대부업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연금업, 보험업, 당초 제정할 때 이런 기업들이 제외된 이유 등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또 이런 명문장수기업을, 예를 들면 명문장수기업 취지가 권장 업종이라든지 사회에서 묵묵히 일해 온 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텐데 약간의 투기성 내지는 이런 것들까지 있는 것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으로 넣을 때 오히려 이 법 취지에 반하는 게 아닌가요? 명문장수기업의 어떤 법 취지가 있을 텐데 이런 걸 그냥, 사회적 변화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위원장 김원이 차관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최근에 기술하고 산업이 융합하면서 부동산업 같은 경우에도 프롭테크 같은 그런 기술기업들이 많이 접목이 된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되고 있고요. 보험업도 사실 인슈어테크라는 그런 테크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종을 이렇게 너무 제한할 경우에는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지금 대상을 더 늘리는 거지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예.

○ 소위원장 김원이 완화해서 더 늘려 주는 거지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예, 저희가 업종 제한 완화할 경우에는 대상이 한 40% 정도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요건들을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다른 요건에서 걸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강 위원님, 이 정도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 강승규 위원 명문장수기업이라는 명문이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진 명문이에요?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부동산업이나 대부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하이테크가 결합돼서 여러 가지 영업 방법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선진화될 수 있으니까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또 할 수 있는데. 저는 명문장수기업이라는 것을 어떤 취지에서, 법을 만든 취지가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명문이라는 게 하이테크를 명문이라고 할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어떤……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현행 법률상 요건에 보면 일단은 장수기업 그러니까 45년 이상 업력을 지닌 장수기업 중에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거나 아니면 브랜드 가치, 기술 수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명문 자를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나 기술 수준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하고 결합된 프롭테크라든지 이런 테크 분야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 박형수 위원 차관님, 이 규정을 이렇게 고치면 결국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 박형수 위원 지금 취지는 현행 법률에는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이것은 아예 대통령령으로 못 하도록, 기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것을 이것은 풀고 일반 유통주점업 등 이런 것 몇 가지만 대상 기업으로 하겠다 그런 취지지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예, 그런 취지입니다.

○ 박형수 위원 발의한 의원님들도 그런 취지로 발의를 한 것인가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형수 위원 그런데 법률에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면 구체적인 게 좋지, 그것을 시행령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법률은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위원님, 다만 입법례를 봤을 때 벤처기업육성 특별법도 일반 유통 주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예가 있고요.

○ 박형수 위원 물론 다른 법률에도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가능하면 위임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과 비슷한 것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

지. 일반적으로 포괄적 위임하는 것처럼 하나만 규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것은 정부로서는 좋겠지만 법률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반 유통업 등 이것보다는 이종배 의원안처럼 안 되는 규정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에 준하는 것들만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에 맞는 거다, 법을 제정하는 취지에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중기부에서는 일반 유통업 등 이렇게 해 놓으면 나머지는 다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것을 선호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명문장수기업으로 안 되는 부분 대표적으로 열거를 하고 그와 비슷한 정도의 그 업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 문구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중기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의견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그게 더 설득력……

이종배 의원안 같은 경우 아까, 예전에 처음 제정할 때 명문장수기업으로 이러이러한 금융업 이런 것들을 제외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등이 불명확하게 하이테크가 접목된다고 그래서 그런 이유 등으로 바로 명문장수기업을 대폭, 아까 보니까 40% 정도가 더 확장된다는 데 그런 취지가 맞는 건지. 이 뒤에도 제외할 때도 이종배 의원안 같은 경우는 대부업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 또 제외해 놨잖아요. 그런 취지 때문에 그랬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시행령에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행령 등으로 그냥 한다고 뭉뚱그릴 게 아니라 이 법의 취지나 이런 걸 좀 더 명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은 그냥 참고로 하고요, 이종배 의원안으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요?

○**박형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조금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시지요. 왜냐하면 이종배 의원안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강승규 위원 얘기하시는 것은 애초에 우리 법에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금융업 이런 것을 제외했었거든요. 이 제외했던 것을 왜 제외를 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풀려고 그런다면 왜 풀려고 했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허용하려는 업종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허용해야 되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강승규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의견 들어서 이것은……

정부 측에서 방금 두 분 취지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왜 확대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좀 설득력 있게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것만 정리되면 그렇게 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다음번 논의할 때 같이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조항은 하여간 계속 심사입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43쪽입니다.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명문장수기업 요건으로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미만일 경우에만 업종이 변동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의원님께서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80% 미만인 경우까지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이종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주된 업종의 기준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고 대분류를 벗어난 경우에는 업종 변경의 타당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수 기업들이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상황에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업종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김상훈 의원님 안을 보면 주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20% 이상이기만 하면 주된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업종 분류를 대분류로 확대하고 또 심의위원회 역할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종배 의원님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적어도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때 현행 명문장수기업 제도에서 업종유지 요건을 도입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해서 주된 업종 변경의 타당성이라는 심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파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 취지에 동의하고 이종배 의원안에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이종배 의원님 안으로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승규 위원 저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해 볼게요.

김상훈 의원안에 대해 검토의견에 한 것처럼 주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 20% 이상인 기업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게 한다 등 이렇게 업종 변경이나 여러 가지 업종을 추가해서 매출액이 다른 부분에서 늘어나고 할 때 명문기업에 처음에 선정하거나 선정된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 기업이라는 것이 활동 내용이 막 변화하면서 당초 명문기업으로 지정한 취지와 상당히 벗어난 업종의 매출액이 훨씬 더 추가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게 명문기업으로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기준의 판단보다 이렇게 완화하거나 했을 때, 이것도 좀 저는 중기부가 이런 부분 등을 면밀하게 부작용 등을 감안해서.....

하여튼 명문장수기업을 제대로 해야 그 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거 아니에요, 자부심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조금 너무, 이게 그냥 민원만,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어려움만 너무 강조된 개정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정진욱 위원 그런데 명문장수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이나 또 새로운 영

역을 가는 것 자체를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종배 의원님 안처럼 대분류를 완화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문장수기업이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유홍이나 사행성을 제외하면 그것이 업종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기업이 갖는 사회적 기여 또 명성, 독특한 성장 배경, 오랫동안 업력을 유지한 장수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 의견 주십시오.

차관님, 두 분 의견 설명 좀 하시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가 대분류로 완화하는 것은 사실 가업상속공제 및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이 24년에 기준의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된 입법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예를 들면 이게 편법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유지하는 건 좋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어떤 혁신을 통해서 뭔가 사업명을 추가했더라도 그런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 명문장수기업을 유지해 줘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그에 대한 특혜도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편법으로 활용될 소지가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조항 완화가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위원님, 다만 기준에도 50% 미만일 경우에는 업종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50%라는 기준이 좀 업계에서는 상당히 자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80% 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대분류 내에서 하게 되면, 사실 대분류라는 체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 취지도 살리고 기업에 편의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까 업종 변화에서 금융 업종이 포함됐습니다. 아까 이종배 의원안에서는 대부업은 제외했지만 대부업자가 금융의 명문장수기업으로 어찌고저찌고해 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이 된 이후에 뭔가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했다고 해 가지고 고리의 대부업을 또 거기다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50% 범위 내라는, 그게 기준이 자의적일 텐데, 그래 가지고 고리대금업자가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우려는 없느냐라는 게 제가 계속 우려를 하는 것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다만 업종에서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배제가 된다면 그 외의 업종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부분은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차관님!

○정진욱 위원 차관님, 명문장수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하네요. 대표적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제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

○소위원장 김원이 사회자한테 발언권 얻고 얘기하십시오.

먼저 정진욱 위원님 질문하셨으니까……

○박형수 위원 그것하고 내가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같이……

○박형수 위원 추가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 위원님.

○박형수 위원 일단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분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대분류와 중분류가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야지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두 가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먼저 분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아니, 명문장수기업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박형수 위원 그리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업력이 45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있어야 되고,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보유 특허 수준, 제품 우수성 등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 명문장수기업에 어떤 기업이 지금 지정돼 있는지 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지금까지 총 53개 사가 지정이 됐습니다. 중소기업이 38개, 중견기업이 15개인데 삼화제지라는 제조업 업체도 있고 백조씽크라고……

○강승규 위원 죽 불러 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백조씽크, DSR제강, 오토닉스, 리노공업, 샘표식품, 유엔아이, 한방유비스, 이화다이아몬드공업, 한국해사기술, 세명전기공업, 미래엔, 한국화장품제조 등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명문기업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2017년부터 지정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얼마 안 됐는데요. 53개면 아직 많지는 않네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다음 질문.

○박형수 위원 이게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혜택은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점 부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기관 보증 이용할 때 보증료율 0.5%p 인하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현판·확인서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별로 혜택이 없네. 그러면 그것 뭐 하려고 지정하나, 그런 혜택이라면?

○오세희 위원 그런데 브랜드라는, 명문기업이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면서……

○박형수 위원 홍보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세희 위원 기업의 신뢰도나 위상, 브랜드 가치……

○소위원장 김원이 샘표하고 백조는 들어 본 기업들인데……

○박형수 위원 이미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인데, 거기는.

○강승규 위원 현대건설 이런 게 명문기업 지정된다는 거잖아요, 명문장수기업.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대기업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 중견기업까지만……

○**오세희 위원** 어디어디에서 인정하는 명문기업 이런 것.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그런데 리스트 들어 보니까 충분히 명문장수기업이라고 할 만한 데네요. 어쨌든 아직까지 남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혜택은 아까 들었고.

그다음에 대·중·소 분류가 어떻게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대기업은 없습니다. 대기업은 안 되고 중소가 38개, 중견이 15개, 총 53개 사 지정됐습니다.

○**강승규 위원** 아니아니, 분류 기준.

○**소위원장 김원이** 아니, 대분류, 중분류……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죄송합니다. 대분류는 예를 들면 금융보험업이 대분류고요. 중분류에는 금융업, 보험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소분류가 은행, 신탁업, 보험업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돼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대분류에 뭐 뭐가 있는지 그 대분류만이라도 한번 불러 주실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대분류는 농업·임업·어업이 한 묶음이고요. 광업, 제조업, 그다음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처럼 이런 분류들이 대분류로 돼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이 기업의 지정 취지를 보면 아주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만 두고 오히려 세부적인 것은 상당 부분 현장의 실사라든지 그런 판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위원장 김원이** 심사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이재관 위원** 그렇지만 큰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사회적으로 가야 될지 향점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어떤 업종을 제외한다라는 것도, 사실 그 업종이…… 이게 또 45년 전이거든요. 45년 전의 산업에 대한 평판과 현재의 판단이 늘 같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소위원장 김원이** 강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아까 이것은 이종배 의원님 안으로 하자는 정진욱 위원님 제안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수용할까요?

○**박형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수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물어볼게요.

○**소위원장 김원이** 예.

○**박형수 위원** 일단 정부에서는 예전의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용 지금 들어 봐도 이해가 됩니다. 어떤 한 기업 업종을 가지고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 매출이 50% 이상이 되면 사실상 다른 사업 아니나라는 취지 때문에 아마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라고 해서 아마 김상훈 의원님도 80%로 높인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100%가 된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대분류 기준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실제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업체의 매출보다 대분류 안에 속하는 다른 매

출이 300%, 400% 된다 이것도 명문장수기업으로 같이 묶어 줘야 되는지 조금 의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같이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크게 일반 식품업 등이라고 하고 아니면 유통 주점업 등등 해서, 건설업 같은 것은 푼다고 그랬는데 건설업 같은 부분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그걸 추가를 해 갖고 나중에 그 매출이 엄청나게 커져 버리면 그걸 계속해서, 그 명문장수기업을 지정한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이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내에서만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다 혜용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문제와 매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승규 위원 저도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정된 사례를 보면 법의 취지가, 명문장수기업의 취지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묵묵히 그 분야를 고집하고 일해 온 장수기업…… 그런데 아까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확장하고 변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문장수기업을 지정했던 그 당시 취지는 묵묵히 일해 온 중소기업, 조금 성장하면 중견기업까지 갔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법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단히 논의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막 확장해 놓으면, 업종도 확장해 놓고 여러 가지 관련 조항에서 확장을 해 놓으면 자칫하면 명문장수기업의 취지를 잊어버릴 것 같아요. 건설업하고 대부업 하는 업체가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되면 사람들이 그것은 ‘어, 그래? 명문장수기업이 저런 기업이야?’ 이렇게 될 소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더 이상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 문제도 조금 더…… 그리고 위원님들 참고해 주셔야 되는 게 1개의 법안은 한 회기 내에 한 번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9번, 앞에서 얘기했던 논의는 계속 심사하고 이것은 통과하게 되면 1번에서 계속 심사한 것은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못 됩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거고요.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46쪽도 이 부분에 대한 시행일, 부칙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함께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 법안은 계속 심사했으면 좋겠네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과 10항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50쪽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고 또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에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54쪽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 운영 시에 대기업·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유통만 중소기업이 담당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포함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의 도입 취지에 더욱 부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 실효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개정안의 '직접 생산'이라는 문구가 이 법 9조에 있는 '직접 생산 확인'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생산'으로 수정하고 생산의 구체적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강승규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동아 위원 잠시만요.

○소위원장 김원이 김동아 위원님.

○김동아 위원 그러면 해외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할 때 이 법에 따른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직접 생산'을 '생산'으로 바꾸고 생산의 범위에 대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때……

○**김동아 위원** 제가 알기로 예전에 교육청인가 워드프로세스를 구매할 때 직접 구매를 안 하고, 그러니까 대기업을 통하지 않고 중소기업 유통업체에 한 게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문제가 돼 가지고 그때 국감에서 한번, 교육위원회에서인가요 그런 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는 게 중소기업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는 건지 그게 약간 의문이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가 해외 생산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보다는, 중소기업이 본인의 해외 생산설비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부분까지 차단해야 되는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아 위원** 가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드를 공급할 때, 예전에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중소기업을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는 대기업을 통해서 구매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아 위원** 그렇게까지 해석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생산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생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정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면……

○**박형수 위원** 잠깐 하나만……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차관님, 여기 생산하는 물품, 생산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정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제공하는 용역이나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가요? 없다라면 왜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 수정의견 보시면 중소기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고 수행하는 공사기 때문에, 직접 생산이라는 제도가 이미 구매촉진법에 있기 때문에 용어상 혼동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소기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나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혼동이 있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박형수 위원** 직접 생산이라는 용어와 구분하는 의미로 생산이라는 말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 규정을 하겠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박형수 위원** 그 말은 일리가 있는데, 일단 생산하는 용역인데 이 생산을 대통령령으로 다시 규정한다, 이게 무슨……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할 때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거나 범위를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하는 건데 이 생산이란 말 자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다라는 게 조금 다른 법률체계하고도 안 맞고 상식하고도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강승규 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생산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90%를 수입이나 대기업에서 한 것을 가지고 10%만 조립만 했다든지 약간의 중소기업 제품으로 위장하는 것 등을 대통령령 등에서 좀 규제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런데 직접 생산이라는 게 지금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생산의 대부분

이 중국을 통해서 오거나 또 직접 생산을 중소기업이 모든 것을 다 생산해서 유통시켜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의견에서 ‘직접 생산 확인’을 ‘생산’으로 수정한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면 생산을 어떻게 규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략이라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직접 생산, 아시는 것처럼 품목별로 특정 부품이나 공정의 수행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의 부가가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해당 업체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해외 설비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인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정진욱 위원 그러면 직접 생산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형태로 규정이 되는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진욱 위원 중소기업자들 중에는 유통 중소기업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경계가 참 어렵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중소 제조기업들의 제품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래의 취지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 취지에 맞게 해 주셔야 될 텐데, 생산의 개념을 규정할 때 그 영을 저희들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시행령 정하시기 전에 미리 위원님들 방에 좀 공유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차관님, 오히려 ‘직접 생산’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 경우에 직접 생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오히려 더 법률의 자구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기 때문에 대상이 좀 더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직접생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박형수 위원님 해소 좀 되셨습니까?

○박형수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면 정부 측 의견대로 처리하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57쪽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매목표 설정과 실적 평가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개정 법률 시행일을 좀 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동의드립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정부 측 의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이오.

○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58쪽입니다.

의사일정 13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고동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품목 비중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내에서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품목 비중이 올라가더라도 공공기관에서 해당 품목을 조달할 때 중소기업 등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만으로 결과적으로 도시형소공인 생산 제품 구매가 실제로 증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신중 검토입니다. 현재도 이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중의 90% 이상이 제조업에 해당되고 도시형소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이 이미 90%를 넘기 때문에 별도로 법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심사인가요? 정부 측에서……

○ 강승규 위원 아니, 부결.

○ 소위원장 김원이 신중 검토, 계속 심사입니다. 그렇지요? 부결까지는 좀 그렇고요. 계속 심사입니다. 부결이면 이것은……

○ 허종식 위원 그것 꼭 적어 주세요, 강승규 위원이 부결이라고 했다고.

(웃음소리)

○ 소위원장 김원이 이것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의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16항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64쪽입니다.

김성원 의원님과 허종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김성원 의원님께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셨고, 허종식 의원님께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해 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원 등은 매출액 600억 원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법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영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못하므로 이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일부가 경감되는 혜택이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한병원협회에서도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의료법인은 고도의 공익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적인 지원시책이 필요하고 또 의료업의 고용창출 효과 그리고 세 번째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타 비영리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전문위원이 지적한 비영리법인이라는 특징 그리고 비영리법인으로서 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특징 등을 감안할 때 정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영리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로 제한함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김성원 위원님 손 드셨습니다.

○김성원 위원 법안을 발의한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적용상의 형평성 문제를 좀 개선하고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법인 등의 정상화를 통해서 국가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발의를 했거든요.

우선은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이후에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도 공익적 요소와 또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수 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서 비영리조직인 사회적기업 또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자에 포함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 또 노동집약적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의료법인 또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좀 불평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법인 의료기관은 지방 의료 취약지 거주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된 제도고 현재도 의료법인의 약

70%가 지방에 소재하고 또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개인이 개설한 병원이나 비영리인 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병원은 중소기업자로서 인정받고 또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에 법인이 설립한 병원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어 가지고 정책적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부처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영리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련해서 비영리단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중소기업기본법은 이미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까지 중소기업에 포함하고 있는 유연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법인은 이익을 개인이 취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익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도 21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의료법인 종사자를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했을 때 이중 혜택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보면 의료법인 그리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수익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비영리법인과는 다르게 매년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업을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에 대해서 일부 경감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 의료기관은 동일한 의료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 국립대병원이나 적십자, 지방의료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차별적인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등 정책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지역의료를 살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김성원 위원님 의견 잘 들었고요.

허종식 위원님.

○허종식 위원 여야가 공정하게 법안을 같이 냈기 때문에……

차관님, 의료법에 지원이 필요한 것을 규정하자 이렇게 의견을 냈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허종식 위원 의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법에 가깝지요? 의사는 병원 내라, 한의사는 한방병원 내라 이런 거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허종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뭐가 들어 있나 하면 의료행위는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런 게 들어 있는 게 의료법이에요. 의료와 관련된,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게 의료법이지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허종식 위원 의료법에는 지원과는 상관이 없는, 즉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치료하는 것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거지요. 비영리법인은 좋은 일 하자고 만들었는데 그것을 지원 안 해 주고 영리법인은 자기들 돈 벌겠다는 데 지원해 주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김원이 위원장님 있는 데, 목포의 한국병원 이런 게 병원급인데 중소 도시에 있는 병원급의 절반이 망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허종식 위원** 절반 이상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대형 병원하고 동네 병원하고 딱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중간 병원급이 다 망해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살릴 거냐? 그래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병원도 지을 때 좀 도움받고 이러려고 요청한 거거든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을 몇 년 전에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가진 분야라서 많이 아는 거예요. 정부가 의료법에 해라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법에, 대기업은 대기업법에 해야지 다른 것 하면 안 되는 것하고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의료법이 맞다, 운영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찬성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허종식 위원님 얘기에 약간 보태 드리면 실제 지역, 이게 건강보험을 부실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지방의 중견 병원급들이 부실화되면서입니다.

○**허종식 위원** 맞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병원급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망하거든요. 아주 작거나 아주 큰 병원은 되는데 중간급은, 예를 들어 2차 진료하려 누가 지방에 있는 병원급을 갑니까? 사실 다 서울에 있는 병원급을 가거나 거기를 얼른 거쳐서 최상위 상급병원으로 가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중규모의 병원들이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도한 건강보험. 제가 이것은 보건복지위원 4년 해서 너무 잘 아는 분야인데.

차관님, 이것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산업적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재정의 전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좀 살펴봤으면,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이나 이런 데 혹시 들어 보셨나요? 안 들어 보셨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좀 들어 봤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협회의 찬성 의견만 들으신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들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강승규 위원** 저도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아까 김성원 위원 얘기대로 하면 의료법인 중 한 70% 정도가 지방의료원이라 그랬어요. 지방 법인이라 그랬어요. 나머지 30%는 대개 어디에, 지역적으로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강승규 위원** 그러면 30%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지방의료원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료원 등에 대해서 중소기업 등으로 여러 특혜를 주는 것에는 많은 분이 찬성할 텐데 만약에 30%라든지 이런 중소기업 범위로 의료법인을 포함했을 때 특혜를 받는 의료법인들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줄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가 지역별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수도권이 70%, 수도권이 30% 말씀 주셨고요. 유형별로 보면 요양병원이 40%로 제일 많고 그 외에 종합병원이 39%, 이렇게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이 합해서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법인에서.

○강승규 위원 그게 문제겠네요. 요양병원이 40%를 차지하면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으로 특혜를 주는 게 맞나요, 지금?

○오세희 위원 거기는 지원이 있는데, 지원이 많아요.

○김동아 위원 거기는 나름대로 지원을 받잖아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의 상당 부분을 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오세희 위원 그럼요.

○강승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분화해서 의견을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허종식 위원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른 거예요. 요양병원에 대해서……

○강승규 위원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이……

○강승규 위원 요양병원도 사실은 요양원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허종식 위원 그렇지요. 병원급 요양병원에 대한 지원……

○강승규 위원 의사 하나만 두면 되고 의사……

○허종식 위원 비영리 부분은 똑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이니까.

○강승규 위원 아니, 그런데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중소기업으로서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저는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허종식 위원 아니, 여기에서 비영리 부분만 지원 안 해 준다는 거지요, 비영리법인만 영리는 지원해 줘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허종식 위원 영리는 지원해 줘요.

○소위원장 김원이 허 위원님은 발의자니까 좀……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신중 검토가 정부에서 신중 검토는 부정적인 의미의 신중 검토인데 저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중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규정해 놓은 겁니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발의자도 말씀하셨는데 비영리법인에도 확대를 해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왜 거기에 확대를 해 왔는지, 그럴 필요성은 뭐였는지, 의료법인을 확대하는 부분이 그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의료법인이라고 해서 모든 의료에 관한 것들을 다 의료법에 규정해야 된다? 그렇

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비영리단체로 한…… 의료는, 기본적으로 의료법에는 의사만이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 형태로만 하는 것에 허용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허용해 준 것이 왜 허용을 해 줬느냐?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을 해 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육성할 수 있다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의료법인이 편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속이나 다른 여러 수단으로도 이용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의료법인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우리 의료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바람직한 방향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된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의료인만 병원을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해 놓고 비영리법인 형태로만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으니까 의료산업 전체에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죽이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깊이 이것을 생각해 보고 다시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제가 보건복지위원 4년 했잖아요. 그 의료법인에서 의료인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엄청나게 휘발성 셉니다. 난리납니다. 하여간 무슨 취지로 발언한지는 우리가 충분히 아니까요.

다른 분들 또 의견 더 있습니까?

○정동만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두 분 법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중소기업법만 개정해서 이렇게 하면 법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타당한지도 제가 볼 때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아까 박형수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면 유치원·어린이집·교회·타 요양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영역에 있는 법인들도 중소기업을 하겠다고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또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한 것은 김성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법에서 정부의 육성·촉진 의무를 규정한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에서 먼저 육성·촉진 의무를 부과했을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저희가 예외적으로 포함을 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중소기업 육성 차원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측면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 의견……

○정동만 위원 또 한 가지 더……

○소위원장 김원이 잠깐만요,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아니, 끝까지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정동만 위원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타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당 법

에서 명확한 지원 근거가 없이 허용해 줄 경우에는 타 분야에서도 똑같은 요청이 있을 것으로 우려는 됩니다.

○정동만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법에서 정부의 육성 의무가 있는 대상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은 하여간 이것은 의료법으로 가라 그거지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개별법에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종식 위원 의료법은 치료하는 거라니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허 위원님, 정진욱 위원님 다음에 박지혜 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정진욱 위원 저도 이 법안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의 의료 현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판단하는 데는. 그래서 지역의 병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데 저는 중소기업기본법 안에 넣어 줌으로써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료를 살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병원이니까 의료법으로 가야 된다든가 어떤 규율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법안들 김성원 의원님 또 허종식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내신 기본 취지도 그런 데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저도 지역의료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데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일부 경감 혜택을 누리고 있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지정했을 때 추가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지역에 있는 의료법인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사실은 조금 구체적으로 판별을 해서 의료법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자료 6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대상 지원시책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창업 지원, R&D 지원, 판로 지원 등등등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중소기업으로 지정했을 때 그러면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그 지역에 있는 의료법인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조치들이 많거든요. 정말 필요한 것을 선별해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의료를 살리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법에서, 중소기업기본법 같은 것에서 특히 기본법의 개념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많은 정책 수단을 결정함에 있어서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어렵네요. 저는 아까 김성원 의원님의 내용이나 허종식 의원님의 내용에 인정되는 측면도 있고 또 박지혜 위원님이나 박형수 위원님이나 정동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 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좀 더……

○박형수 위원 하나만.

○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 박형수 위원 다음 회의 때 차관님께서 아까 위원장님이 보건복지부 의견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관련 기관과 그다음에 관련 단체들 의견들도 다 같이 한번 수렴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소위 단계에서 하고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나중에 가면 거기서 빠졌던 단체들이 법사위 단계에서 문제를 막 제기하면 또 혼선이 생기거든요. 아예 여기서 모든 관련 단체들의 의견도 다 듣고 부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충분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김성원 위원님.

○ 김성원 위원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질문들이나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소위 논의 때 그렇게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해 주십시오.

○ 소위원장 김원이 다행히 발의자 두 분이 여기 계셔서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의원실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조항은 넘어가고 다음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67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16항 허성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16항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먼저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구축과 운영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벤처연구원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전담기구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업무를 위탁 중에 있고 또 연구원이 이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던 점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명시적인 사업위탁 근거가 없어서 2024년부터 보조사업에서 위탁사업으로 전환했는데 이 경우에 사업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오.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이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이오.

○ 전문위원 성소미 6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구원이 2019년부터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공공성을 감안한 수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마지막으로 71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과 사업수행 방식을 출연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운영 및 사업 경비를 출연하도록 규정하는데 현행은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출연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사업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의 위탁사업을 추가하고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3페이지 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정부지원사업 수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3개, 지금 현재 위탁사업이 5개로 운영되고 있고 또 74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금과 보조금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습니다.

출연금은 집행잔액이 이월 가능하고 또 이자수입의 재투자 등이 가능해서 연구원의 집행 자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도 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는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출연사업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또 출연금 편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재정법의 취지 그리고 보조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는 출연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재부에서는 신중 검토 입장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25조의2제5항제8호와 제9호 간에 중복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8호에 ‘그 밖에 국가 또는’을 ‘국가 또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전문위원 의견에 수정 동의하는 것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가 끝났습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그러면 개정안대로 의견을 모아 주신 것이지요?

○강승규 위원 개정안대로.

○전문위원 성소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의결하면 되는데, 잠깐만요. 기재부가 신중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산자위 의견은 올리고 정부 측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의결한 대로. 자신 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현재 출연을 못 받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지금 허성무 의원님이 제안하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견이 없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 처리가 가능한데 이렇게 의결해 버리면 허종식 의원님 안하고 김성원 의원님이 낸 안을 한 회기에 처리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정기국회 내에 우리가 법안심사를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 번 더 해 보고 그때 14·15번 항이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을 빼고 허성무 의원안은 그때 처리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인데요. 허성무 의원님 안은 별 의견이 없어서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허종식 의원님 법률안하고 김성원 의원님 법률안은 한 번 더 정기국회 내에서 우리가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본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동의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15·16항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21항까지 이상 5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소위 심사자료 2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 1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잠깐만요, 1권만 배부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생겼나 봐요. 2권 다 가지고 계신가요? 확인해 보세요.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다 갖고 계시지요? 시작해도 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성소미 장철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입니다.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유효기간 내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올해 4월 달에 소위 심사가 있었습니다. 단지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백년소상공인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다라고

제시해 주신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시행령 등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으로 인한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관계 법령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더라도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유사 입법례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를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시행 이후에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적용례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8쪽입니다.

백년소상공인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실제 영업 여부 또 지정 요건 유지 여부 등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페이지 9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을 추가하고 또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중요해지고 에너지 비용 상승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신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조직·예산 등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이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세희 위원님, 좋은 법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11쪽입니다.

김동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에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사용 용도에 이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로 인한 부담을 덜고 일·가정 양립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이 법에서 규정해서 소진기금을 통해서 중기부가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고용보험법 등에서 규정해서 고용노동부 등이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출산·육아 문제는 기존에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해 온 바 있고 출산여성에 대한 출산급여에서 일부 중복 수혜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부와 협의해서 추후 사업 추진 시 중복수혜 방지하도록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시행일을 6개월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김동아 의원님 법률안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법률안은 동의하고……

○**소위원장 김원이** 시행시기만 바꾸는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6개월……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형수 위원** 고용노동부 의견은 해소됐다는 얘기예요? 해소됐다는 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맞습니다.

○**김동아 위원** 고용노동부 관련된 법안도 개정안 냈습니다, 참고로.

○**소위원장 김원이** 김동아 위원님 좋은 법 감사하고요.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페이지 17쪽입니다.

의사일정 20항과 21항입니다.

이만희 의원님과 정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지원 그리고 시설복구비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천재지변 등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재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올해 5월 27일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보상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전 행위로 정의되기 때문에 보상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전문위원 설명대로 정부는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이미 5월 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통해서 관련 규정이 명시가 되었고 국가의 행정조치가 개입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 손실 보상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듣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계속 논의합시다.

○소위원장 김원이 계속 심사요? 2건 다지요?

○박형수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번·21번 항, 이만희 의원님 법안하고 정희용 의원님 법안은 계속 심사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18·19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20항·21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정회 할까요?

○허종식 위원 예, 정회하고 합시다.

○소위원장 김원이 저희가 꽤 속도를 냈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2시 30분에 개회하면 어떨까요? 제가 2시에 기후특위 소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박형수 위원 3시에 의총이 있는데요.

○소위원장 김원이 아, 3시 의총이에요?

그러면 일단 2시에 개회해서 최대한 몇 건이라도 더 할까요?

○허종식 위원 그러지요. 한 3시까지만 하고……

○소위원장 김원이 3시까지 1시간 정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원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6항까지 이상 5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소위 심사자료 2권 21페이지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과 오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열악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부정경쟁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선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수립 적용 시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적용례가 필요하다는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반영해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24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 원쪽의 표

를 보시면 개정안에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그리고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 ‘기업환경 개선’, ‘판로 확보’, ‘업종별 육성’ 등 밑줄 친 표시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육성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 제공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현행에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어서 3년 주기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종합계획 수립 적용 시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적용례를, 그리고 이미 수립·시행된 계획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보호’를 다 빼고 ‘육성’으로 바꾸셨는데 소상공인 보호 역시 정부의 책무이므로 ‘보호’라는 단어는 계속 포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립·시행 주기를 3년으로 현행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시행 주기 및 적용례 규정 추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전문위원님 정부 측 의견 반영해서 조문 해 주시고요.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32쪽입니다.

의사일정 24항부터 26항까지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그리고 정진욱 의원님, 이재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는 소상공인의 요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서는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리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삭제하고 개정안에서 소기업 중에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김상훈 의원님께서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이재관 의원님께서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늘리지 않거나 고용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경기 변동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매출액 변동성을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신중 검토입니다. 발의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소상공인 특성상 매출액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출액 단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경우에는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고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오세희 위원** 이것은 상시 근로자 수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을 OECD 국가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종업원 수를 넣은 것이라고요. 지금 5인 미만은 여러 가지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적용을 예외로 받고 있고 금융기관, 폐업, 경영 안정, 재창업 이런 모든 것들이 연동이 돼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분류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됐어야 될 뿐더러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그런 매출 추이가 굉장히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1분기는 소상공인 됐다가 2분기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됐다 이래서 그전에도 조금의 얘기는 있었지만 거기에 연동된 법들,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근로기준법, 금융, 경영 안정, 폐업 지원 모든 게 5인 미만으로 돼 있어서 관련 업계의 수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럴 때는 혼란이 굉장히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개정한 게 2014년인가 15년인가이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15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15년인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이재관 위원** 그러면 그 당시의 중소기업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3년 평균 매출액 적용했습니다.

○**이재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런 거고,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자산총액하고 종업원 수 등을……

○**이재관 위원** 그때도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했다가 나름의 문제가 좀 있어서 매출액 기준으로 지금 조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관 위원** 지금 소상공인 기준…… 물론 10인, 5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한 어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기준이 갖는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어요.

우선 소상공인도 고용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업종에 따라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혜택을 벗어나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하는, 고용을 유발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쪽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는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 또 전문직 같은 경우는 아주 고액의 소득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 기준이 갖는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조정을 한 것이거든요.

작년에 전기료 지원 기준을 할 때 영세소상공인의 기준을 뭘로 볼 건가, 처음에 30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신청자가 적으니까 6000만 원으로 더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1억 400만 원으로 올려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한 해의 영세소상공인의 기준을 사실은 정확하게 가늠을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그렇다고 지금 현재의 어떤 현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3년 이후에 소상공인의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했을 때는 향후에 3년 동안은 소상공인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준을 뭔가 그 기업들이 발전적으로 성장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용을 회피하게 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소상공인이 결국 소기업 중에 특정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소기업 구분할 때 매출액 기준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모두 적용해 달라는 게 관련 업계의 의견이고 해외의 사례이기 때문에 소기업에서 매출 기준이 한 번 적용이 되고 그중에서 또 소상공인을 할 때는 종업원 수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관 위원 그러면 소기업 기준하고 지금 소상공인 기준이 따로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소기업 기준은 매출액 기준으로 있고요. 그 소기업 중에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대상으로 소상공인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출액이 전문직종인 경우, 법률이라든지 회계 관련된 그런 전문업종 같은 경우 거기도 지금 소상공인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쪽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소상공인으로 하고 있고요. 매출액 기준은 평균 매출액으로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억 원 이하 중에 종업원 수가 5인 미만인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이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게 그러면 앤드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앤드의 개념입니다, 소기업 중에서 종업원 수가 몇 명 미만.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매출액 회피는 사실은 매출로 해도 매출을 쪼개기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의 기준을 바꿀 때는 그 업계가 95.1%로 큰 부분인데도 의견 수렴 없이, 기준을 바꿨을 때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금융기관의 적용이라든지 국가에서 적용하는 모든 제도가 상이해서 이게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는 반발이 크거든요. 그러면 부수적인 매출은 꼭 따라갑니다. 5억이라든지 10억 미만, 30억 미만에서 5억 미만, 그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예민한 법들에 연동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3년 단위라고 하지만 1년도 굉장히, 요즘같이 굉장히

빠른 시대에는 수시로 매출이 오르락 하거든요. 그때마다 위치가 달라져서 소기업으로 갔다가 중소기업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준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많은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해야 되지, 지금 부수적으로 매출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매출로만 해 버리면 모든 게 적용됩니다. 소기업이나 이런 걸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오세희 위원님은 약간 신중 검토 하자는 의견이시지요?

○**오세희 위원** 예,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위원님.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신중 검토?

○**박형수 위원**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해 볼 텐데, 이 다음 38페이지에 있는 안까지 같이 종합검토를 할 텐데 만약에 38은…… 이것도 신중 검토네.

○**구자근 위원** 저도.

○**소위원장 김원이**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중기부 입장도 같은 입장입니까, 현장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라는 같은 입장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을 계속 받겠다라고 치고 매출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의 상향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력을 더 고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매출액은 상향됐는데도 이 지원을 계속 받고자 해서 지금 이런 소상공인 직을 유지하는 그런 사항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지적하신 대로 의도적으로 비고용 유발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기업이라는 매출액 기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으로 매출액이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인가 중소기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구자근 위원** 이것은 법 제정 이후에 기준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러니까 소기업은 매출액으로 되어 있고요. 소기업 중에 종업원 수가 몇 명 미만인 경우는 소상공인으로 별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현재는 영세소상공인 법적 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혹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그렇게 한 예가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영세소상공인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신중 검토 입장이기 때문에 영세소상공인도 같은 차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구자근 위원 지금 현재는 매출액이 적거나 환경이 좀 바뀌거나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현재 일부 사업 집행에 있어서 간이사업자 기준이라든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토론을 해 주셨지 싶은데, 신중히 검토하자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24부터 26은 신중 검토로 일단 해 놓겠습니다.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계속해서 38쪽입니다.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인데요, 영세소상공인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정진욱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중에 업종별 매출액 그리고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해 주셨고. 그리고 이재관 의원님께서는 소상공인 중에 업종별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개정안 모두 정부의 영세소상공인 시책 수립과 시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원 대상에게 적합한 정책 수단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상공인의 매출액 그리고 자산 분포 분석, 영세소상공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 지원 정책에 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정부 측은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개념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업종별 매출액 기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소상공인 개념 자체가 이미 영세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영세소상공인을 별도로 법적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소상공인과 영세소상공인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행정 비효율 등이 우려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관 위원님.

○이재관 위원 지금 혹시 통계상으로 소상공인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전체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관 위원 예.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800만 정도……

○이재관 위원 한 770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770만.

○이재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영세소상공인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영세소상공인이라는 정의 자체가 사실 저희가 일부 사업

에 있어서……

○**이재관 위원** 이런 겁니다, 취지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현재의 애로를 모르고서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료 지원 같은 것도 할 때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얘기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이재관 위원** 그렇지만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어떤 타깃이 저는 분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영세소상공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출액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는 한계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상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하는 정부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논의들이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는데도 지금 현재 개선된 부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지금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정부 측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진욱 위원님이오.

○**정진욱 위원** 이재관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이어서 해 보면, 소상공인의 숫자도 사실은 770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또 보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세소상공인, 현재 기준이 없으시니까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영세소상공인을 정해 놓고 일을 했을 때는 중기부의 일이 굉장히 늘어날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막연하게 소상공인으로 놔뒀던 영역보다 훨씬 더 어떤 책임감도 커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기부가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소상공인 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작은 상공인과의 접점에 있으신 건데 이걸 뭔가 정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갖게 되는 어떤 부담 이게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다 맡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군가를 국가가 지원한다면 또 그분들이 주요한 타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소상공인을 최대한 정확히 정의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반드시 중기부가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영세소상공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1인 가게 혹은 1인 기업이 어느 정도지요?

그냥 아시는 분 대답하셔도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인데요.

아까 소상공인 전체가 한 800만 명이고 그중에 한 70% 수준이 1인 사업자로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 이 기준을 사실 영세소상공인들 1인으로만 해도 상당히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 기준 혹은 지원책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현장 다녀 보면 소상공인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1인 기업이나 1인 가게 차려 놓고 얼마나 힘에 겨워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그냥 소상공인

들하고 묶어 버리면 정책을, 그러니까 핀셋 정책을 폐기가, 마이크로 타깃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 측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법안에다 1인 기업, 1인 상인으로만 해도 할 일은 되게, 저는 정부의 역할은 생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가요 다른 위원님들, 오늘 결론이 다 안 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정부 측에서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든지 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떤 기준이나 혹은 지원책 혹은 현황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들에 대한 마이크로 타기팅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법제화할 거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음번 보고를 좀 받아 보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특히 1인 기업 이게 엄청나요, 70%잖아요. 1인 기업, 1인 가게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사실은.

○정진욱 위원 400만이 넘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니까요.

오세희 위원님.

○오세희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그러면 1인이라고 그래서 매출이 낮은 게 아니고 요즘 온라인 업체가 많으니까 임시 고용직으로 해서 그것을 하면서 또 가족 단위로 하면서 1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매출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던 것은 영세소상공인은 중기부에서 지금 기준이, 만약에 지금 전체 토텔 매출 해 가지고 이 정도가 하위라고 보겠다 할 때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굳이 영세로 또 나눴을 때는 그러면 중소 또 거기서 분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중기부가 지원에 관한 것을 그렇게 할 때는 그 안에서의 매출 추이라든지 기준을 갖고 하는 상태인데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그러면 매출이 또 오르면 그 영세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나, 1인이라고 해서 1인이 아니고 가족 단위가 모여 있기 때문에 또 가족은 구성원으로 쳐주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그래서 저는 이 구분을 지금 상태에서 할 때는 정말 굉장히 큰 범위이기 때문에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을 해서 공감을 얻어 가 줘야지, 전통시장은 거의 이 상태면 붕괴입니다, 1인이고 가족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라면 하고 또 관련 업계의 얘기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 정리를 할 때, 지금 일단 중소기업하고 소기업은 매출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매출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은 거기마다 근로자 수를 고려해서 소상공인을 다시 분류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세소상공인 개념을 더 만들자라는 것인데, 이 기준을 매출기준으로 다 통일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소상공인 또는 영세소상공인은 인원 수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영세소상공인 개념을 다시 만드는 것은, 개념을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실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세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을 만들

었을 때는 어떤 지원책을 할 수 있고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해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대충 된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동 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동시에 올라왔는데 지금 위원님들 심의 결과 22번·23번 항은 의결이 가능하고요. 24·25·26은 계속 심사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24·25·26은 정부 측에서 기준이라든가 지원책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어서 24·25·26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다시 논의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서 22·23을 좀 나누어서 의결을 하고 본회의로 넘겼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우리 법안소위 실적도 올려야 되니까 그렇게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23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24·25·26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27항부터 29항까지 이상 3건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성소미 페이지 41쪽입니다. 김동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행령에서 중증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도록 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비 부담 없이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지원인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것인지 아니면 재량사항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업무지원인제도 예산 지원 근거 마련에 동의합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무규정으로 두는 부분에 대한 재정 당국의 반대 등을 감안해서 일반적 임의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44쪽입니다.

의사일정 28항 허성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에는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고 경과조치로서 법인 전환 시에 법인의 명칭, 정관·재산 등의 물적 요건 그리고 임직원등의 인적 요건과 기존 행위의 효력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고 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이라는 공적 사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감독을 받는 점을 반영 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입법정책적으로 민간단체인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가 설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설립하는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진욱 위원님.

○정진욱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하고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경제인협회에서 재산을 출연해서 만들었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이걸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하면 정부 산하기관이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센터는 산하기관이고 공공기관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게 되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정진욱 위원 그런데 민간이 재산을 출연해서 설립한 법인인데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이후에 기관 대표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진욱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장애경제인협회에서 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장애인기업협회에서 협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진욱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출연한 역사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정부가 바꾸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들 의견 주십시오.

○ 박형수 위원 조직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행안부하고 협의는 필요하지 않은가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지금 현재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기부의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장을 관할 부처 장관이 아니라, 물론 협의하게 돼 있지만 민간협회장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다음 아까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신 그 출연 문제는, 장기종 설립 시에 출연금 10억 원은 협회가 아닌 장기종 초대 이사장 특정인의 출연에 해당이 되고 출연 재산은 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사유재산 침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진욱 위원 저는 사유재산 침해라고는 말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의 굉장히 특이한 분이셔서 자기 재산을 출연을 하셨던 것인데, 민간인이 재산을 출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분명히 한국장애인협회를 발전시켜서 장애경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분이 그냥 자기 재산을,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냥 출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안 되지요.

○ 박형수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물어본 것, 이것 행안부하고 협의는 필요 없는 사항이에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예, 이미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다만 이 명칭 변경은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 박형수 위원 이게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인협회 산하에 있는 것을 중기부 산하로 지금 옮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명칭 변경만이에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협의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형수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허종식 위원 차관님, 센터를 기업진흥원으로 바꾸고 또 협회에서 중기부로 바꾸면 장애인들에게 뭐가 좋아지는 거지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일단은 지금 현재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이 공공기관으로 대표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진흥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 허종식 위원 회장님을 경제인협회에서 임명하는 것은 꼭 중기부장관이 임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민간이 임명하느냐 관에서 임명하느냐 이 차이인데, 그러면 일반……

○ 김동아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의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국가의 사업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민간협회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도 될 수 없고 사실은 중기부가 책임지고 센터장을 임명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되고, 민간단체가 그냥 설립했으면 우리가 법에서 민간센터를 지원하거나 예산을 추가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민간 자율적으로 방치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중기부 입장에서 장애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도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건데, 협회 산하기관인데 중기부가 뭐 하려고 거기에 지원하겠으며, 이게 당연히 저는 중기부가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고.

제가 협회 내부 관계를 좀 아는데 협회가 지금 사실상 와해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해 상태인 협회가 지금 국가의 돈이, 국가 세금이 투입된 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센터가 그냥 국가 예산을 지원 받을 명분이 없는 거지요.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협회가 뭐……

○**허종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장애인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느냐,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

○**소위원장 김원이** 맞아요.

허종식 위원님 질문 받아서요 사실 우리는 이런 단체나 협회나 민간이든 공공이든 사실은 장애인기업하시는 분들이 편의를 제공받고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실제로. 그게 지금까지의 평가는 어때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면, 예산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재정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민간한테 맡겨 뒀더니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매년 100억 정도 저희가 정부 예산이 지원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100억이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100억 규모로 지원이 되고요.

○**소위원장 김원이**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매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많이 가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2018년에 이미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김동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기관의장을 민간 협회장이 임명한다는 부분은 다른 기관하고 비교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센터장을 그 협회장이 임명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중기부장관과 협의하여 협회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형적인 제도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소위원장 김원이** 잠깐만요, 구자근 위원님 먼저 신청했거든요.

구자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구자근 위원**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까 답변을 못 하시길래.

이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근거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리고 협회나 그런 쪽에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의 취지는 충분히 정부에서 동의를 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정부가 다 하지 못한 부분을 민의 영역에서 충분하게 자발적으로 시행해서 했던 부분인데.

저는 진홍원 이름 개명하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외부에서 봐서 공공성을 가미한 공공성이 있는 단체라고 느껴지지 못하는 부분에서, 수요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홍원으로 개명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처음 만든 단체가 반대하는 제안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숙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원이 정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진욱 위원 구자근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그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인데 정부가 반드시 그 장을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협회와 센터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 기형적인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조금 더 논의해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다음번 논의할 때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 협회에 지원한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재정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센터를 포함해서 협회…… 종합지원센터에 매년 100억이라며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한 총 규모가 어느 정도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저희가 센터에만 지원하고 협회에는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센터에 100억씩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센터에 지원하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타 기관 아까 정진욱 위원님 질문하셨던 다른 경우, 기타공공기관인데 꼭 정부가, 장관이 임명해야 되는가 안 그런 사례는 없는가 이런 것도 좀 조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구자근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을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허성무 의원께서 공공기관 센터장 임명을 민간협회가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신 바 있고요. 사실은 후속조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리고 센터에 10억 출연한 것 이외에 그 협회가 지원하고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그게 전혀 없는데 계속 임명권만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으니까요.

○소위원장 김원이 같이 끓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부 측 설명을 해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이건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페이지 50쪽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이연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원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기부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또 지원사업 추진 시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위탁기관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명시할지 또는 중기부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세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지원사업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드립니다. 다만 법상 디자인진흥원이라는 특정 기관에 한정하기보다는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그런데 이 법안의 기본 취지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한다.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한 지원사업을 해야 될, 왜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얘기가 돼야 되지.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왜 디자인 개발만 촉진합니까? 제품 생산하는 것도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해야 하는 근거가 뭔지, 그래야 법률이 보편타당성을 가지지 이렇게 한 분야만 특정해 가지고 이걸 지원한다? 나는 이 법률이 법률의 보편성의 원칙에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중기부에서 그런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봤나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위원님, 지금 현행법의 제10조의2에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는 조항이 별도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밑에 이번 개정안은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명확히 하는 측면과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형수 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법을 만들 때 내가 이 토론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하기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러면 중기부에서 앞으로 이런 법률 검토를 할 때 내가 방금 얘기한 그런 원칙에 맞는지를 좀……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법률을 다 규정할 수 없잖아요. 법률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율하는 거고 그것은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성 다 있지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법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전반적인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것은 그런 법률이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무슨 특정한 부분에 지원을 하고 그걸 하나하나의 법률을 다 만들어야 된다? 이건 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이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박형수 위원님 보태서, 개별 법률로 실질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국디자인진흥원뿐만 아니고 다양한 기관들이 디자인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디자인진흥원이라고 못을 박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없을지 그리고 방금 박형수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 기관을 법률에 명시할 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중기부가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할 것인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냥 통과하면 된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원이** 박형수 위원님, 이번 건까지는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분들 의견 없으면 의결 절차 들어갈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구자근 위원** 아니, 답을 줘야지. 내가 지금……

○**소위원장 김원이** 죄송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그래서 아까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저희가 수정의견을 드렸습니다, 특정 기관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잘 들었고, 그걸 반영해서 조문 하는 거지요?

○**전문위원 성소미** 예.

○**소위원장 김원이** 그러면 의결 절차 들어갈까요?

○**전문위원 성소미** 예.

○**소위원장 김원이** 의사일정 제27항·29항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 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 제28항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부터 37항까지 이상 8건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보고하기 전에요.

이게 지금 총 8건이지요. 8건이 같은 법안인데 보시면 30·31·32 이것은 크게 쟁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32항까지만 일단 얘기를 듣고.

3시에 의총 가셔야 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32항까지만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힘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성소미** 54쪽입니다.

의사일정 30항 권칠승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사회·문화·관광에 관한 전통시장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동사업에 중고품 매매·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통시장 등에서 문화와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상인에 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참여형 시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려면 다음이오.

○전문위원 성소미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31항과 32항입니다. 김위상 의원님과 김원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전통시장에 한정되어 있는 화재공제사업 운영 및 공제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김위상 의원님께서는 상점가를 추가하고 김원이 의원님께서는 이외에도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부칙은 김위상 의원님께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리고 김원이 의원님께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규정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화재공제의 가입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지원 규모 그리고 상점가 상인의 민간 보험가입 현황 등을 감안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개정안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 범위에 있어서는 골목형상점가도 보험료 부담 등으로 민간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까지 포함한 김원이 의원님 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제상품 개발 및 예산 확보 등으로 1년의 공포 후 경과 일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추가로 부담되는 재정은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지금 27년 기준으로 하면 한 5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기재부하고는 협의해 봤습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향후 5년, 30년까지 소요예산에 대해서 총 277억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습니다.

○**박형수 위원** 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소위원장 김원이** 다른 분 의견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지금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관련해서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36% 정도 됩니다.

○**구자근 위원** 그 정도 올랐어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요즘 좀 올랐습니다, 홍보가 많이 돼서.

○**구자근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에 가 보면,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자부담 좀 하고 이렇게 하면 화재보험 가입을 거의 100% 할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잘 안 돼요. 그게 자기 상가도 있지만 임대해서 하는 상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정책의 효과를 내려고 그러면, 이왕 지금 전통시장 상점들의 화재 위험성을 대비하고 또 안전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가입하는 부분이나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저는 한 30% 정도라고 봤는데 36% 같으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좀 봐야 될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노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잘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33번부터 37번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주로 온누리상품권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은 논의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시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의원총회를 가셔야 돼서…… 혹시 지금 현재 정회했다가 속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건 모르는데 오늘 그만 시마이합시다.

○**소위원장 김원이** 아직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방금 얘기는 삭제해 주십시오. 시마이 얘기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 이 정도 하고 우리가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냥 의원총회에 집중하시게 여기서 산회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팬참을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소미 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승규 구자근 김동아 김성원 김원이 박지혜 박형수 오세희 이재관 정동만
정진욱 허종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노용석
정책기획관 김우중
소상공인정책관 이대건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황영호